성주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제정이유

○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과 군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안 제3조)

다.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조사자의 의무기준 마련(안 제4조)

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기준 마련(안 제5조)

마. 택시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정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7. 9. 14. ~ 10.10〕

라. 성별영향평가분석 : 개선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택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과 군민의 교통편의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택시 서비스 개선, 운송종사자의 의무와 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의 관리감독과 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리 검토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택시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여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